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- 2016. 5. 29. 법률 제1417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6. 8. 30.부터 시행되는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40조의2 신설)
- [별표 3] ‘재산조회를 할 기관·단체 등’을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(안 [별표 3])
- 특히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‘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법원의 조회명령’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‘법원의 제출명령’에 해당하고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2항, 이 규칙 제45조에 따른 ‘재산조회에 드는 비용’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4항, 같은

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‘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’
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인바, 실무 운용상의 불필요한 혼선을 방
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취지를 [별표 3] 하단에 명확히 규정함

- 또한,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건물
의 소유권에 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회비
용이 들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

3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2(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)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.

제46조제3항 중 “별표 3의 순번 5 내지 15 기재”를 “별표 3의 순번 5 부터 12까지, 15 기재”로 한다.

[별표 3]을 다음과 같이 한다

[별표 3]

재산조회를 할 기관·단체 등

순번	기관·단체	조회할 재산	조회비용
1	법원행정처	토지·건물의 소유권	20,000원
2	국토교통부	건물의 소유권	없음
3	특허청	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	20,000원
4	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	기관별 5,000원
5	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	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(다음부터 "금융자산"이라 한다)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
6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7	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8	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9	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10	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11	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, 전문조합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12	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	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13	(삭제)	(삭제)	(삭제)
14	(삭제)	(삭제)	(삭제)
15	「보험업법」에 의한 보험회사	해약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	기관별 5,000원*
16	미래창조과학부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	5,000원*
17	교통안전공단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	20,000원

* 순번 5부터 12까지,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 란의 금액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‘명의인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’이 포함되어 있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신설>	제40조의2(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 청구)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46조(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) ①~② (생략) ③ 법원은 별표 3의 순번 5 내지 15 기재 “기관·단체” 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,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·연합회·협회 등(이하 “협회등”이라 한다)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.	제46조(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원은 별표 3의 순번 5부터 12까지, 15 기재 “기관·단체” 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,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·연합회·협회 등(이하 “협회등”이라 한다)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3] 재산조회를 할 기관·단체 등 <table><tr><th>순번</th><th>기관·단체</th><th>조회할 재산</th><th>조회비용</th></tr><tr><td>1</td><td>법원행정처</td><td>토지·건물의 소유권</td><td>20,000원</td></tr><tr><td>2</td><td>국토교통부</td><td>건물의 소유권</td><td>10,000원</td></tr><tr><td>3</td><td>특허청</td><td>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</td><td>20,000원</td></tr><tr><td>4</td><td>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</td><td>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</td><td>기관별 5,000원</td></tr><tr><td>5</td><td>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</td><td>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」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(다음부터 “금융자산”이라 한다)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</td><td>기관별 5,000원</td></tr></table>	순번	기관·단체	조회할 재산	조회비용	1	법원행정처	토지·건물의 소유권	20,000원	2	국토교통부	건물의 소유권	10,000원	3	특허청	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	20,000원	4	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	기관별 5,000원	5	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	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」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(다음부터 “금융자산”이라 한다)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	기관별 5,000원	[별표 3] 재산조회를 할 기관·단체 등 <table><tr><th>순번</th><th>기관·단체</th><th>조회할 재산</th><th>조회비용</th></tr><tr><td>1</td><td>법원행정처</td><td>토지·건물의 소유권</td><td>20,000원</td></tr><tr><td>2</td><td>국토교통부</td><td>건물의 소유권</td><td>없음</td></tr><tr><td>3</td><td>특허청</td><td>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</td><td>20,000원</td></tr><tr><td>4</td><td>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</td><td>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</td><td>기관별 5,000원</td></tr><tr><td>5</td><td>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</td><td>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(다음부터 “금융자산”이라 한다)</td><td>기관별 5,000원*</td></tr></table>	순번	기관·단체	조회할 재산	조회비용	1	법원행정처	토지·건물의 소유권	20,000원	2	국토교통부	건물의 소유권	없음	3	특허청	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	20,000원	4	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	기관별 5,000원	5	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	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(다음부터 “금융자산”이라 한다)	기관별 5,000원*
순번	기관·단체	조회할 재산	조회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법원행정처	토지·건물의 소유권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국토교통부	건물의 소유권	1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특허청	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	기관별 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	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」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(다음부터 “금융자산”이라 한다)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	기관별 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순번	기관·단체	조회할 재산	조회비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법원행정처	토지·건물의 소유권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국토교통부	건물의 소유권	없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특허청	특허권·실용신안권·디자인권·상표권	2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	기관별 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,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	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(다음부터 “금융자산”이라 한다)	기관별 5,000원*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		50만원 이상인 것	
6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, 자금중개회사, 단기금융회사, 명의개서대행회사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
7	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의한 상호저축은행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
8	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
9	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
10	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의한 신용협동조합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
11	「산림조합법」에 의한 산림조합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
12	「새마을금고법」에 의한 새마을금고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
13	(삭제)	(삭제)	(삭제)
14	(삭제)	(삭제)	(삭제)
15	「보험업법」에 의한 보험사업자	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	기관별 5,000원
16	미래창조과학부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5,000원
17	교통안전공단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	20,000원

	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	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	
6	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, 증권금융회사,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7	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8	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9	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10	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11	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지역조합, 전문조합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12	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기관별 5,000원*
13	(삭제)	(삭제)	(삭제)
14	(삭제)	(삭제)	(삭제)
15	「보험업법」에 의한 보험회사	해약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	기관별 5,000원*
16	미래창조과학부	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	5,000원*
17	교통안전공단	자동차·건설기계의 소유권	20,000원

* 순번 5부터 12까지,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 란의 금액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'명의인예의 통보에 사용되는 비용'이 포함되어 있음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349